

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9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조례 체계 미비점 정비
- 독서문화 진흥 행사 개최 시 물품 배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 확보

2. 주요내용

- 가. 제4조(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) 및 제6조(독서문화 진흥사업) 조문을 통합(현행 제6조 삭제)하고, 시장의 독서교육 기회 제공 내용을 통합 제시(안 제4조제3항)
- 나. 행사 개최에 따른 물품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한 내용 신설(안 제4조제4항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5. 9. 16.~2025. 10. 10.(24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의견 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경기도서관

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” 을 “독서문화 진흥사업”
으로 변경한다.

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지역·직장·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1.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
 2.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·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
 3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각급 학교, 직장,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
 4. 장애인, 노인,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
 5.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
 6. 독서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·지원

- 7. 독서경진대회, 백일장,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
 - 8.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또는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도서관정책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
	팀장 직위·성명	도서관정책팀장 박종은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장경미 (031-790-6790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<u>제4조(독서문화 진흥사업)</u>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지역·직장·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</u> 2. <u>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·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</u> 3. <u>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각급 학교, 직장,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</u> 4. <u>장애인, 노인,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</u> 5. <u>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</u>

<신 설>

제6조(독서문화 진흥사업) (생략)

6. 독서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·지원

7. 독서경진대회, 백일장,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

8.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또는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<삭 제>

관계법령 발췌서

1

「독서문화진흥법」

[시행 2024. 5. 1.] [법률 제19794호, 2023. 10. 31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4조(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